

#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2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조례의 내용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3조 인용조문 수정
  -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으로 인용조문 수정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3항”을 “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5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지원센터의 조직) 지원센터에는 자격을 갖춘 센터장 1명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종사자 2명을 두어야 한다.</p>	<p>제13조(지원센터의 조직) ----- ----- ---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제5항 ----- ----- -----.</p>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## 4. 작성자

작 성 자	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
연 락 처	(033)330-2150

# 관계 법령

## □ 다문화가족지원법

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- ④ 생략
-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·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- ⑥ ~ ⑦ 생략